

200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2003년 5월

5월은 지난 1년 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세 신고대상자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특별공제와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경과일수에 미납부세액의 0.03%를 곱한 무거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며 소득금액의 계산은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text{소득금액} = \text{총수입금액} - \text{필요경비}$$

※ 장부의 비치·기장

- 간편장부대상자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구 분	직전연도 수입금액
1)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 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3억원 미만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 5천만원 미만
3)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사업·교육·보건·사회·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7천 5백만원 미만

-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이중으로 기록한 장부를 보관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거운 가산세를 물고,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물게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세금을 내야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으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 직전연도 매출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 중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업종구분	기준금액	
	2002년~2003년	2004년~2005년
1)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 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1억 5천만원 이상	9,000만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9,000만원 이상	6,000만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사업·교육·보건·사회·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6,000만원 이상	4,800만원 이상

-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주요경비} - (\text{수입금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 위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의 1.2배를 한도로 함

※ 주요경비의 범위

- 매입비용

상품·제품·원료·소모품·전기료 등의 매입비용과 외주기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된 퇴직금

◎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의 종류

- 매입비용 및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며, 일반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받는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조서 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여야 합니다.

②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 직전연도 매출액이 위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산출세액의 계산

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ext{산출세액} = (\text{소득금액} - \text{소득공제}) \times \text{세율}$$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	세율	누진공제
1,000만원 이하	9%	0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8%	90만원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7%	450만원
8,000만원 초과	36%	1,170만원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소득세 신고서식과 작성요령 및 업종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및 문의

국세청 납세홍보과(02-397-1564)

E-mail : ho25400@nts.go.kr